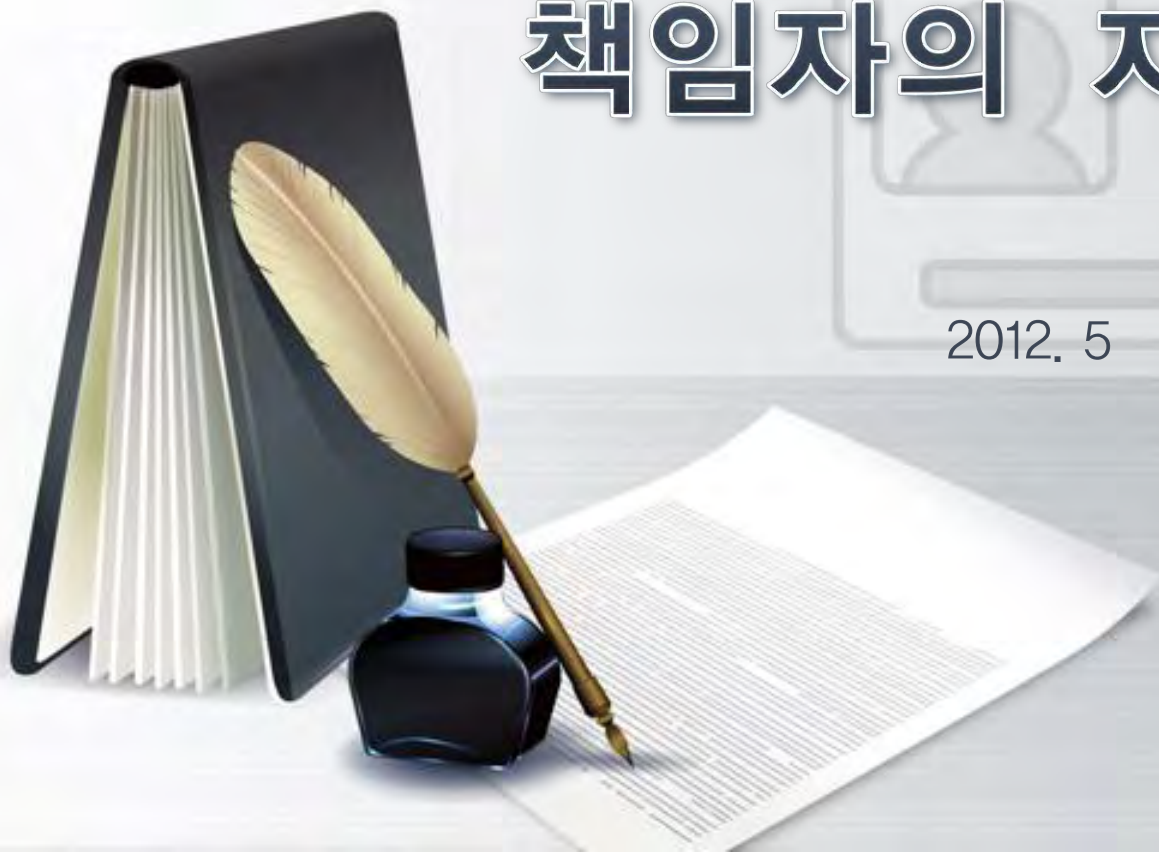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자세와 역할

2012. 5



행정안전부

CONTENTS

/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 개인정보책임자의
자세와 역할

///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중점 개선사항



I.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1. 시대의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

- 공동체간의 유대를 중요시 하며 상호간의 관심을 미덕으로 여김
- 농경중심의 산업구조로 서비스나 마케팅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음
 - ※ 개인의 사생활 보장보다 관심을 중시하고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관대함

상업 및 서비스 중심의 국제적인 도시사회로 변화

- 인터넷을 서비스, 해외 온라인 구매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각 확대
- 상업화에 따른 각종 홍보물의 증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 증가
 - ※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개인정보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대두

공동체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된 문화를 확산해 가야 함

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개념

혼자 있을 권리 (소극적)

개인의 생활영역 또는 개인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 생활 영역에 대한 한정된 정보로서의 인간 생활영역을 의미

자기정보 결정권(적극적)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기정보결정권의 기본정신

- 타인에 의한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는 개인정보의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처리방식에 따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나
-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처리·조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

Robert
Ellis Smith

-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 중 핵심요소
 - 프라이버시 보호대상 : 정보 + 신체 + 통신 + 공간

3.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란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수집 · 이용하고,
-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및 외부의 공격으로 부터 유출 · 변조 ·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유출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야기

기업/기관 신뢰성 저하로 인한 이미지 손상 및 대규모 소송 제기시 경제적 손실과도 직결

국가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 사회적 혼란 야기

-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추진 필요

4. 개인정보책임자의 역할 확대

개인정보의 범위 및 서비스 범위의 확대

개인정보

이름 / 주민등록번호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개인의 생각?

서비스

웹

위치추적

텔레매틱스

전자주민카드

가상 현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발생시 기관의 위상 및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침

- 이미지 손상에 따른 고객 이탈, 대규모 손해보상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짐
- 다양한 서비스 및 개인정보 저장매체 확대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늘어나 침해위험은 증가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정보화부서에서 모든 부서로 확대됨

기관전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책임자의 역할 확대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제정, 계획 수립, 교육 등 전사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력 · 예산 투입
- 부서에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관리 및 감독 수행

5.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동향

미국

-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
 - 공공부문 규율, 민간부문 자율 통제
- **[오바마 정부] 프라이버시와 국가보안의 IT 보안정책**
 - CTO(국가최고기술책임관) 신설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EU

- **각국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일반법 제정 · 시행 중**
 - '전자통신프라이버시 지침에 유출통지 의무화('02)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광고 규제에 따라 EU지침 개정 공식화('10.2월)

일본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시행 (2005)**
 -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심 증대에 따른 보호조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인적 · 기술적 기반의 정비 및 대응강화
 - 개인정보보호 예산의 확충 및 대응체계 강화

네덜란드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2001)**
 - 정보등록법(1998)의 정보처리행위에 대한 신고 · 등록범위 확장
 - 민간 · 공공, 온 · 오프라인의 개인정보처리 규율
 - 정보처리의 적절성 확보 및 실질적인 조사 · 감독 수행

6. 개인정보보호 원칙 : OECD 프라이버시 8 원칙

-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1980년)
-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인 기준

원칙	내용
1. 수집제한의 원칙	어떠한 개인정보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함
2. 정보의 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는 사용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갱신·유지되어야 함
3. 목적 명확화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시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4. 이용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시 정의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됨
5. 안전성 확보 원칙	개인정보가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수정 및 공개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6.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짐
7.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내용을 수집, 관리하고 있는가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제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책임이 있음

6. 개인정보보호 원칙 : UN 가이드라인

●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 지침(1990년)

구 분	내 용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Principle of Lawfulness and Fairness)	개인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처리되어야만 하고 UN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정확성의 원칙 (Principle of Accuracy)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사람 및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보가 정확한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목적구체성의 원칙 (Principle of the Purpose-specification)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관련개인에 의한 접근원칙 (Principle of Interested person Access)	정보주체에게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며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알 권리와 잘못된 정보의 삭제권 등 여러 보호 권리들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비차별 원칙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개인관련정보의 주체들은 종교적, 인종적, 성적 차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외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관 (Power to make Exception)	국가안전, 질서유지, 타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반인류적 범죄추적 등 목적과근거가 정당하게 제정된 법규정에 구체화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보안원칙 (Principle of Security)	자연재앙이나 컴퓨터바이러스, 권한 없는 접근 등으로부터 이러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한다.
감독과 제재 (Supervision and Sanctions)	모든 국가들은 원칙들의 준수를 감시할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야만 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규정 및 보호규정들도 만들어야 한다.
국경 없는 정보흐름 (Trans border Data Flows)	개인정보가 국가간에 전달될 때 해당 국가에 충분한 사생활보호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보는 해당 국가간에 자유롭게 전달·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적용범위 (Field of Application)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공적, 사적 기관들에 적용되어야만 하고 컴퓨터파일 뿐만 아니라 수작업 파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6. 개인정보보호 원칙 : APEC 프라이버시 원칙

역내 프라이버시 보호수준 제고
및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04.11)

주요내용

9원칙으로 구성



※ 지역내 국가간 정보이전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절차 및 부담은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 원칙 적용 추진

6. 개인정보보호 원칙 : 우리나라

OECD 가이드라인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의 질 확보의 원칙

3. 목적 명확화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성 확보 원칙

6. 개인 참가의 원칙

7. 공개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보장
(법 제3조, 제18조)

처리목적의 명확화
(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법 제3조, 제18조)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법 제3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법 제3조, 제30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법 제3조, 제35조, 제36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법 제3조, 제29조)

7.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년 3월 30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는 **일반법**

- 그동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체계
- 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규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로 상호간 개인정보 교류 증대가 예상되며, 전 세계적 국제통상 관련 프라이버시 라운드(Privacy Round) 대두
- 수집단계, 이용·제공 단계, 폐기단계 등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명시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피해구제** 강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권 보장
- 개인정보유출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등 피해구제 강화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

제1장	총 칙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 절차,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 소송허가신청 및 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8장	보 칙	적용제외, 금지행위, 비밀유지, 침해사실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제9장	벌 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부칙 : 시행일, 다른 법률의 폐지,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II. 개인정보책임자의 자세와 역할



1. 개인정보책임자의 수행업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총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 ※ 기관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시행을 총괄

처리실태 조사 및 관리 감독

-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개인정보의 파기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계획 등 각종 자료를 관리하고 수집목적 달성된 자료의 파기를 감독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민원처리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관리, 접근기록에 대한 정기 감사 등 보호조치 이행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2. 개인정보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개인정보 책임자의 권한

- 기관내 개인정보 처리현황,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 조사 및 보고 받을 수 있음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사적인 책임을 지므로 소속 부서에 관계 없이 조사 및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불이익 방지 및 신분보장

지원 규정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정보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개인정보책임자의 의무

-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
 - ※ 기관내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선하는 총괄 책임을 짐

3. 개인정보책임자의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책임자 자격요건

-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
- 고위공무원이나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3급 이상 공무원
- 시·군·구는 4급 공무원
- 각급 학교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기 준

기관의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국장급 공무원

4. 개인정보책임자의 자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의 **소양 확보**

- 개인정보보호 원칙, 법 주요내용, 국가 주요정책 등에 대한 학습 및 연구
-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관련법률에 대한 관리 역량 확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관리 및 정기감사 수행
-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적극 노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제도개선 등을 적극 수행
- 개인정보취급자 및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5. 협조 요청사항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 지원

- **소관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 및 제도 개선**
※ 보건 의료, 금융, 교육기관 등 분야별 소관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수집서식 개선 등 적극 추진
- **분야별 서식 및 개선사례 공유를 통해 법 조기 정착 지원**
※ 행안부에서 배포한 27개 업종별 사례 및 수집동의서식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확산

중점시책 및 필수 조치사항 이행

- **주민등록번호 최소화 를 위한 서식 개선 등 시책 추진 협조**
- **개인정보에 대한 위탁 및 제3자 제공 최소화**
※ 외부기관, 업체에 제공할 경우 유출위험이 증가하므로 제공을 최소화 하고 제공할 경우 관리 감독 철저
-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이행**
※ 2012.12.31까지 암호화 필요(내부에서만 사용 하는정보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암호화 여부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홍보 및 전파

-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을 사업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적극 안내**
※ 230개 시군구 협조로 소상공인에게 CCTV 안내판 등 필수조치사항을 안내(4월)함
- 향후 기관별로 민원실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필수 조치사항 안내 지속 실시 요망

[참고] 국가 개인정보보호 추진전략



[참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대책

수집 이용 단계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 수집 이용 관련법령 일제정비, 주민번호 수집여부 확인제도 운영,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

관리단계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 관리자PC와 인터넷망 분리, 웹사이트 게시전 주민번호 사전 차단, 주민번호 처리 재위탁 제한, 주민번호 이용내역 통지제 도입

침해대응단계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체계 마련

- 정부합동 상시 모니터링 실시, 해외포털 및 웹사이트를 통한 유출 차단, 주민번호 대책 부처 협의체 구축,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CERT) 구축

사후조치단계 이용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인식제고

-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 처벌규정 강화, 이용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교육홍보 강화

III.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중점 개선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 후 비교

구 분	기 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 정 개인정보보호법 ('11.9월 시행)
규율대상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51만 사업자)	공공 ·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350만 사업자)
보호범위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포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 제한 규정 없음	원칙적 처리금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유출 통지	관련 제도 없음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화
집단분쟁조정	관련 제도 없음	집단분쟁제도 도입(재판상 화해 효력)
단체소송	관련 제도 없음	단체소송(권리침해 중지) 도입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위반사례 및 중점 개선사항

1. 개인정보 수집절차 준수 및 처리방침 공개

① 필수항목, 선택항목 구분 없이 한꺼번에 동의 받는 사례

⇒ **각각의 동의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선택항목,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음

②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별도 미고지 · 미동의 사례

⇒ **주민등록번호 처리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필요**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미공개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해킹 등 유출사고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법령의 근거, 법령상 업무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동의 없이 수집 가능)

2. 위반사례 및 중점 개선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례
 ⇒ **개인정보책임자 및 취급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접근을 통제**
 ※ 인사이동 등에 의해 시스템 접근권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 부정 접근 방지
- ②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시스템 등 침해사고 방지 조치 미적용
 ⇒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철저히 하여야 함**
- ③ DB의 접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은 6개월이상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하여야 함
- 내부망 저장 고유식별정보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 적용여부, 적용범위 결정
- 2012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 완료

2. 위반사례 및 중점 개선사항

3. CCTV 설치 · 운영시 이행사항 준수

- ① 안내판 미설치 및 안내판의 필수 고지항목 누락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② CCTV 영상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은 사례
⇒ CCTV 담당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불필요한 열람 방지
- ③ CCTV 영상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관리하여 접근통제 미비
⇒ 잠영상정보는 잠금장치 등 접근통제가 가능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CCTV 설치 관련 필수 이행사항

-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설치가능
-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등 민감한 장소에는 설치 금지
- 임의조작이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서는 설치 전 공청회, 설명회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2. 위반사례 및 중점 개선사항

4. 제3자 제공 최소화 및 위탁 절차 준수

① 개인정보를 임의로 다른 기관에 제공

⇒ 다른 법률의 근거, 정보주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 제공 가능
제공시에도 문서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공대장에 기록

※ 제공근거, 목적, 범위를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가능)

② 개인정보의 외부업체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

⇒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위탁을 최소화하고 재위탁은 가급적 금지

개인정보 위탁시 준수사항

-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문서에 의하여야 함(법26조, 영28조)
- 위탁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법26조 2항) -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가능
-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함(법26조 4항)

※ 위탁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참고〉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 및 필수 이행사항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

- 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2 개인정보 수집 제공시에는 꼭 **동의 받기**
- 3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 4 개인정보파일의 암호설정 등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이행사항

1.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수집
2.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수집 금지
3.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4. 처리방침을 인터넷이나 사업장에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 등 안전성 확보 조치
6.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7. 이용이 끝난 후 반드시 파기
8.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9.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 : (전화) 02)2131-0111, (홈페이지) privacy.nia.or.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